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어 지방보조금에 관한 근거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 및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2021년 7월 13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상 명시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내용을 동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관련 법률 인용 조문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통해 인용조문 개정 등 지방보조금 관련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